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

◈ 동 지침은 사업주훈련, 컨소시엄훈련, 실업자·재직자 훈련,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 기관에 대해 공동 적용

□ **대상기관: 훈련기관***

* 실업자·재직자 훈련기관, 공동훈련센터, 파트너훈련기관 등 고용부 직업훈련 관련 훈련기관 전체

□ **추진기간**: '20. 2. 7.~ 위기경보 해제 시

□ **구체적 대응내용**

< 일반 사항 >

○ **중국을 다녀온** 훈련 교·강사, 훈련생은 **입국 후 14일간*** **업무, 훈련 등에 참여 배제**

* (예시) 2월 6일 15:00 입국자는 2월 20일(D+14)까지 업무, 훈련 등 배제

○ **훈련기관은** 감염증 예방을 위한 **예방수칙 안내문 부착, 손 세정제 비치, 기관 소독** 등 **위생 조치 및 청결관리**

< 상황별 훈련과정 운영 및 조치 >

① 훈련생, 훈련 교·강사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

○ **(과정 운영)**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**훈련기관의 전체 훈련을** 14일간 **임시 중단***한 후 관할 고용센터, 인력공단 지부·지사에 변경신고**

* 확진판정일 기준 운영되고 있는 모든 훈련과정은 14일간 임시 중단, '확진판정일+1일~확진판정일+14일'에 운영 예정이었던 과정은 확진판정일로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훈련 시작

**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29조,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9조제3항 (즉시 신청가능)

○ **(안전 조치)** 확진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및 강의하는 훈련 교·강사에게는 검진 권고

② **훈련생, 훈련 교·강사 중 확진환자의 접촉자,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**

○ **(과정 운영)** 훈련생이 접촉자·의심자인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정상 운영

- 훈련 교·강사가 접촉자·의심자인 경우 관할 고용센터, 인력공단 지부·지사에 변경신고 후 대체 훈련 교·강사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 운영

- 단, 확진환자의 접촉자·의심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들이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, 인력공단 지부·지사에 훈련 기간 등을 변경 신고하여 운영 가능

○ **(안전 조치)** 확진환자와 접촉한 훈련 교·강사, 훈련생 및 의심자는 자가 격리 조치

* 훈련 중 발열·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)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의심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, 보건소 조치 시까지 마스크 착용시키고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

- 확진환자의 접촉자·의심자와 같은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및 강의하는 훈련 교·강사에게는 필요시 검진 권고

③ **환자 발생 지역 등에서 감염을 우려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**

○ **(과정 운영)** 훈련기간 변경을 통해 훈련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훈련기관 지도(훈련기간 변경 등)

< 출석 인정 >

○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기간 중 **훈련과정 출석 인정**

▪ 확진자, 접촉자, 의심자: 격리 기간
▪ 검진자: 검진일
▪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 등 휴교·휴원으로 본인 자녀 돌봄을 위해 훈련 불참한 경우: 휴교 또는 휴원 기간 중 불참한 기간
* 내일배움카드제 운영관련 제적, 중도포기 할 경우 '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'으로 간주하여 불이익 등 조치 배제(차감, 훈련횟수에 미포함)
▪ 중국 방문 이력 있는 훈련생: 훈련실시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
* 예: 3월 1일 입국하고 3월 5일 훈련실시인 경우, 입국 후 14일 경과인 3월 16일부터 훈련참여 가능하므로 3월 5일~15일 동안(12일) 출석 인정

< HRD-Net에 훈련생 체크 및 격리 조치 알림 팝업창 개설 >

○ 인력공단, 한국고용정보원에서 HRD-Net에 훈련생 체크 및 격리 조치 알림 팝업창을 개설할 예정

- 훈련기관은 훈련 진행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훈련관리지침 등을 수시로 확인

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훈련 관리 참고 사항

1. 훈련생 중 감염확진자 및 감염우려자 사전체크
2. 해당 훈련생 발생 시 즉시 격리 및 **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(1339)에 신고**
3.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부지사에 문의 및 보고

※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,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(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)

□ 행정 사항

○ 관련 상황 발생 시 **출결 등 불이익이 없도록** 인력공단, 지방관서 등에 통보 및 필요한 전산 조치

- 인력공단 지부지사 통보 시 붙임의 '신종 코로나 일일보고서' 활용

- 검진, 격리 확인, 훈련중단 등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문 의료기관 소견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

* 관련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등 보건당국,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등으로 대체하여 훈련생의 검진·치료 및 훈련기관의 행정 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

붙임 **신종코로나 일일보고서**

신종 코로나 일일보고서

1. 훈련기관

훈련기관	
보고일자	

2. 발생현황

연번	훈련과정명	훈 련 시 간		인 원 관 리 현 황				
		시간(분)	시작~종료	대상	응시	결시	의심 및 확진자	조치자
1		시간	: ~ :					
2			: ~ :					
3			: ~ :					
4			: ~ :					

***신종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자 발생 과정만 작성 및 보고**

3. 조치진행 사항

조 치 업 무		확인 사항			
		과정명	과정명	과정명	과정명
1	훈련 진행 상황 및 확인				
2	해당 훈련장소 일시 봉쇄				
3	훈련생 중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 격리				
4	관할 보건소 및 1339에 신고				
5	해당 보건업체의 지시에 따른 방역 및 후속조치				
6	관할 인력공단 지부지사에 통보				

4. 특이사항

특 이 사 항	확인
○ - -	(점검내용)